

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

□ 제 정 : 2012. 6. 29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여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업자문”이라 함은 수원과학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 단체(이하 “산업체등”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산업교원”이라 함은 수원과학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산업자문료”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수원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 협력단”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산업교원 구성)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, 경영 분야,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2만원(부가세 별도)에서 최대 10만원(부가세 별도)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0%를, 산학협력단에 10%를 배분한다.

8-0-2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년 6월말, 12월말에 2회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.

제7조(실적평가반영)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및재계약임용시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산업자문 신청서					
지원분야 (해당분야선택)	아공학기술자문 / 경영지원 / 디자인 / 컨설팅				
신청기관(업체)	기관명		대표자		
	담당자	연락처:		E-mail:	
	주소				
희망자문기간	2012 . . ~ 2012 . . (총 시간)	산업자문료	(원)		
산업자문 주제					
산업교원 (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)	성명	소속/부서	연락처	참여율(100%)	비고
현재의 문제점					
산업자문 희망사항					
성공시 기대효과					
기타제안					

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.

2012. . .

신청 기관 : 대 표 : (인)
(사전에 선정된 경우) 수원과학대학교 산업교원 : (인)

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[별표 2]

산업자문 결과보고서			
지원분야 (해당분야 선택)	아공학기술자문 / 경영지원 / 디자인 / 컨설팅		
신청기관(업체)명			
자문일시(기간)	2012 . . ~ 2012 . . (총 시간)	산업자문료	(원)
산업자문 주제			
자문 내용 및 결과			
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 업체명: 대표: (인)			

위와 같이 신청기관(업체)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12. . .

산업교원 소속 : 직위 : 성명 : (인)

붙임 1. 산업자문료 입금증 사본

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